

■ 목 차

■ 소식 ■

미얀마 홍수 피해 복구 후원금 전달.....2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콘텐츠제작사의 영화 리메이크 라이선스 계약 검토.....4
 한국 대형설비 제조업체의 중국 설비판매계약 검토.....4
 중한합자법인을 대리하여 석탄매매분쟁 소송 수행.....5
 한국 의료사업법인에 대한 지분 양수도거래 자문.....5
 한국 설비제조법인과 중국 합자법인 간의 매매계약 분쟁 중재 절차 수행.....6
 한국 법인의 중국상표출원 이의에 관한 자문.....6
 [캄보디아] BNK캐피탈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KBSC를 대리하여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MFI 라이선스 취득 자문.....7
 [인도네시아]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소속 멀티파이낸스 운영법인(스와달마 파이낸스)의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자문.....8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민간대출 사법해석 주요 내용.....9
 [베트남] 공공투자법 및 민관협력투자에 관한 시행령 제정.....11
 [캄보디아] 캄보디아 전력 산업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15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잠행조례 실시세칙」 발표 예정.....18
 국무원 사무청, 「삼중합일'의 통합 등기제도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18
 중국인민은행 등 10개 부서, 「인터넷 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 연합 발표.....18
 [캄보디아] NGO 등에 관한 법률(LAW on Associ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시행.....20
 [일본] 기업행동규범.....21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기본원칙.....22

■ 소식 ■

미얀마 홍수 피해 복구 후원금 전달

지평 본사에서서는 지난 8월 26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을 찾아 최근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미얀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묘탄페(Myo Thant Pe) 주한 미얀마 대리대사에게 전달된 후원금은 미얀마 홍수 피해 복구와 구호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에서도 프로 및 직원들이 미얀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을 마련하였고, 회사에서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동일 금액을 후원하였습니다. 지난 9월 15일 DICA(미얀마 외국인 투자 등록청)에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17일에는 미얀마 현지법인의 전직원이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구호품 및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홍수 피해 성금\(2015. 8. 26.\)](#)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홍수 피해 복구 후원금 전달\(2015. 8. 26.\)](#)

[관련 사진]



(좌로부터 법무법인 지평 고세훈 변호사, 정철 변호사, 묘탄페(Myo Thant Pe) 주한 미얀마 대리대사)



(좌로부터 법무법인 지평 유정훈 변호사, 장성 미얀마 현지법인장, Aung Naing Oo DICA 사무총장 외 관계자)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콘텐츠제작사의 영화 리메이크 라이선스 계약 검토

지평은 한국 콘텐츠제작사의 영화 리메이크 라이선스 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문희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대형설비 제조업체의 중국 설비판매계약 검토

지평은 한국 대형설비 제조업체의 중국 설비판매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엄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중한합자법인을 대리하여 석탄매매분쟁 소송 수행

지평은 중한합자법인을 대리하여 석탄매매분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장옥영 중국변호사

한국 의료사업법인에 대한 지분 양수도거래 자문

지평은 한국 의료사업법인에 대한 지분 양수도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채광호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 설비제조법인과 중국 합자법인 간의 매매계약 분쟁 중재 절차 수행

지평은 한국 설비제조법인과 중국 합자법인 간의 매매계약 분쟁 관련 중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장옥영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상표출원 이의에 관한 자문

지평은 한국 법인의 중국상표출원 이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 경영동 중국변호사 장옥영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 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

BNK캐피탈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KBSC를 대리하여 캄보디아 중앙 은행으로부터 MFI 라이선스 취득 자문

지평은 BNK캐피탈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KBSC를 대리하여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MFI 라이선스 취득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소속 멀티파이낸스 운영법인(스와달마 파이낸스)의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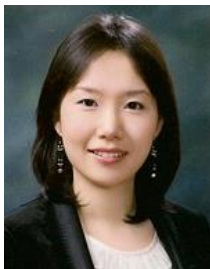
지평은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소속 멀티파이낸스 운영법인(스와달마 파이낸스)가 발행한 지분 중 과반수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딜은 한국 전업 카드사 최초의 해외 진출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담당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설일영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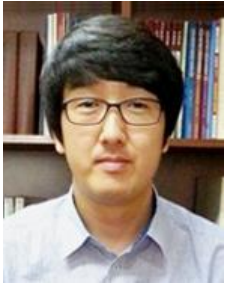
이상희 미국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민간대출 사법해석 주요 내용

(법무법인 지평 [채광호](#) 중국변호사)

지난 8월 6일 최고인민법원은 「민간대출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 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민간대출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민간대출 사법해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대출'의 정의

'민간대출 사법해석'에 따르면 '민간대출'이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의 자금조달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로써 기존 사법실무에서 모호하게 해석되던 민간대출의 정의와 행위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과의 대출과 구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기업간 대출의 효력

기존 사법실무에서 적용된 1991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인민법원의 대출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민간대출 행위의 주체는 대주 또는 차주 중 적어도 일방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간 대출 행위에 대하여서는 1996년 중앙은행이 발표한 「대출통칙」 등에 의하여 통상 국가의 금융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기업간 대출계약은 무효' 내지 '기업간 대출금지'라는 '원칙'은 사법실무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왔으며, 금융질서 유지 및 금융리스크 예방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민간대출은 금융대출이 어려운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기업간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면 위 '기업간 대출금지'라는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투자를 비롯한 변형된 다양한 '기업간 대출행위'가 급증하고 이러한 변형에 따른 분쟁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래 당시는 서로 간에 '기업간 대출'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형화된 '투자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자 거래의 실질은 '기업간 대출'임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등 '기업간 대출'과 관련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분쟁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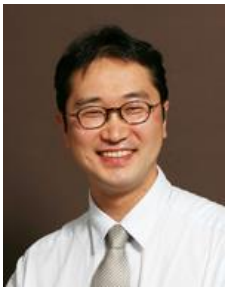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대출시장을 새로이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실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민간대출 사법해석'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대출 사법해석'에 모든 '기업간 대출'이 적법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차주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과 경영상의 수요'에 기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대주인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간 대출'이 해당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민간대출 이율

이율에 대한 규제는 민간대출의 핵심 이슈로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관리의 편이성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 주체인 대주와 차주의 실제 수요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대출 이율 관련한 사법해석에서는 기준대출이율의 4배를 초과하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대출 사법해석'에서는 확정된 이율을 명시하여 보호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대출 사법해석' 중 이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대주와 차주 간에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연인 간의 대출에서 이율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ii) 대차 쌍방이 약정한 이율이 연 24%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차 쌍방이 약정한 이자율이 36%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의 이자는 무효로 인정되어 차주가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이미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iii) 사전에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대출한 금액을 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iv) 대차 쌍방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주는 사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공공투자법 및 민관협력투자에 관한 시행령 제정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베트남에서 종래 민자사업 방식의 공공시설 투자는 2009년 11월 27일에 제정된 『BOT, BTO 및 BT계약에 기초한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Investment on the Basis of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and Build-Transfer (BT) Contracts』(No. 108/2009-ND-CP)(이하 'Decree 108')에 의해 규율되었습니다. 그러나 Decree 108은 투자법과 건축법에 근거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상위 법률에서는 민자사업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Decree 108이 독립된 법령에 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6월 18일 공공투자법(Law on Public Investment)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그 하위 시행령으로 2015년 2월 14일 『민관협력 방식의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Investment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No. 15/2015-ND-CP)(이하 'Decree 15')이 제정되어 2015년 4월 1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Decree 15는 입법 형식으로는 공공투자법의 시행령으로 신규 제정되었지만, 실질 내용 면에서는 Decree 108에서 종래 규율해온 사항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Decree 108과 비교하여 Decree 15에서 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Decree 1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협력 사업 방식

종래 Decree 108은 BOT, BTO 및 BT의 3가지 방식만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ecree 15는 4가지 방식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방식의 사업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Decree 15 제3조).

- ① BOT (Build-Operate-Transfer):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일정기간 직접 운영한 뒤 정부기관에 양도
- ② BTO (Build-Transfer-Operate):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바로 정부기관에 양도하되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음
- ③ BT (Build-Transfer):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바로 정부기관에 양도하되, 다른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토지를 받음
- ④ BOO (Build-Own-Operate):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자신이 소유하며 일정기간 운영
- ⑤ BTL (Build-Transfer-Lease):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정부기관에 양도하되, 일정기간 관련 운영권을 받고 이를 정부기관에 임대
- ⑥ BLT (Build-Lease-Transfer):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일정기간 관련 운영권을 받고 이를 정부기관에 임대한 뒤, 임대기간 만료 후 정부에 양도
- ⑦ O&M (Operation & Management): 투자자가 일정기간 해당 시설을 운영관리

이로써 투자자들은 사업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민관협력 사업 분야의 종류 및 요건

Decree 15의 적용을 받아 민관협력 사업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시설의 건설, 개발, 운영관리 및 기간시설의 공급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Decree 15 제4조).

- ① 교통 인프라시설 및 관련 서비스
- ② 가로등, 상·하수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공공주거 및 이주단지, 공공묘지
- ③ 발전소, 송전 설비
- ④ 건강(healthcare), 교육훈련, 문화, 스포츠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시설, 공공기관 청사

- ⑤ 상업, 과학기술, 기상, 수자원, 경제구역,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정보기술단지를 위한 인프라시설
- ⑥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인프라시설 및 농산품 가공 및 유통 연계 서비스
- ⑦ 기타 수상(Prime Minister)이 정하는 분야

한편 민관협력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Decree 15 제15조 제1항).

- ①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 분야, 지역 및 계획과 합치될 것
- ② 상기 민관협력 사업 분야의 종류에 해당할 것
- ③ 투자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자금,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④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양질의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을 것
- ⑤ 상기 사업 분야 중 ⑥(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인프라시설 및 농산품 가공 및 유통 연계 서비스)와 O&M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최소 200억 동 (VND 20,000,000,000) 이상일 것

3. 공공 자금의 최대 출자 한도 폐지 및 공공 자금의 사용 목적

종래 Decree 108은 BOT, BTO 및 BT 사업에 대한 공공 출연 한도를 총사업비의 49%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ecree 15는 공공 출연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부 자금이 민관협력 사업 분야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래 Decree 108은 공공 자금의 사용 목적을 부속시설의 건설, 토지 철거, 보상 및 이주 지원, 기타 사업 지원 분야로만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Decree 15는 공공 자금의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Decree 15 제11조 제2항).

- ①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 ② BTL 또는 BLT 기타 유사한 방식에서 투자자에 대한 임대료 및 기타 용역대가 지급

- ③ 부속시설의 건설, 토지 철거, 보상 및 이주 지원

4. 민간 투자자의 최저 출자 한도

민관협력 사업 분야에 민간 투자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사업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Decree 15 제10조). 또한 만약 총사업비가 1조5천억 동(VND 1,500,000,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민간 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i) 총사업비 1조5천억 동 부분의 15% 및 (ii) 총사업비 중 1조5천억 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10%를 합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 투자 혜택 및 정부 보증

민관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Decree 15 제55조).

- ① 법인세법 감면
- ② 수입 관세 감면
- ③ 토지사용료/임대료 감면

한편 국회가 결정한 투자계획과 행정부의 투자계획에 속하는 인프라시설 건설, 기타 수상이 정하는 핵심 사업의 경우 자금의 역외 송금을 위한 외환 매입을 정부가 보증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전력 산업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



(법무법인 지평 김형근 변호사 · 캄보디아 사무소장)

2013년말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의 전기 보급율은 약 22.5% 정도(도시 지역: 54%, 농촌 지역: 13%)에 불과한 실정이나,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 지역에서의 전기 보급율을 100%로, 2030년까지 농촌 지역의 전기 보급율을 70%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캄보디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5% 정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자급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전력 산업 관련 인허가 개관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캄보디아 전력 사업에 관한 기본 법률과 정부기관

캄보디아에서는 2011년 2월 공포된 전기법이 전력 사업 전반을 규율합니다.

전기법에 따라 정부부처인 광물에너지부가 에너지 정책, 전력 개발 전략과 환경 및 안전 기준 등을 제정하나, 전력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구인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가 전력 사업을 관리·감독하며, 전략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전기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책기관이나 감독기관은 아니나 정부투자기업인 Electricite Du Cambodge가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전력 산업 관련 라이선스의 신청

전기법에 따른 라이선스는 발전 라이선스, 송전 라이선스, 급전 라이선스, 배전 라이선스, 도매 라이선스, 소매 라이선스, 하청 라이선스, 통합 라이선스로 구분됩니다. 통합 라이선스를 부여 받으면 앞서 언급된 모든 라이선스 하에서 허용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발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보호, 안전, 보건, 규격 및 규격 등에 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전력 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에 신청서, 사업보고서와 함께 환경보호, 안전, 보건 및 규격에 대한 규정 준수가 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이 직접 라이선스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캄보디아에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라이선스 신청을 하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라이선스 신청에 있어 회사의 기본 서류 이외에 시설에 대한 도면, 부지의 사진 및 해당 시설 소재지 지방행정기관 장의 의견서와 지역 주민의 동의서 등 해당 부지 관련한 자료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한편,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규정 준수를 담보하는 차원에 보증금 또는 보증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보증금 또는 보증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IPP 사업의 가능 여부

전기법과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독립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ducer, 이하 'IPP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법에서는 발전 라이선스에 따라 판매용 전력의 생산을 위한 시설의 소유, 운영,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권리를 부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법 해석상 IPP 사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는 통상 IPP 사업자에게 발전 라이선스 이외 별도로 전력 공급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도매 또는 소매 라이선스 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핀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의 전력 판매 사업에 있어서의 독점적 위치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IPP 사업자는 Electricite Du Cambodge와 전력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Electricite Du Cambodge에게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판매 가격은 Electricite Du Cambodge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전력요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PP 사업이 가능하나 독립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2) 면세 혜택

캄보디아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 투자등록을 신청을 하여 적격투자프로젝트(Qualified Investment Project, 이하 'QIP')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IP로 인정되면 관세를 면제 받고 최대 6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사업은 QIP로 인정되어도 법인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관세 면제 이외에 법인세 면제 혜택이 가능함에도 전력 사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법인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잠행조례 실시세칙」 발표 예정

중국은 부동산등기 업무 취급 관련 자세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잠행조례」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잠행조례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시세칙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급매물이 대거 발생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와 부동산세(房地產稅) 개설도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국무원 사무청, 「'삼증합일'의 통합 등기제도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최근, 국무원 사무청은 「삼증합일(三證合一)의 통합 등기제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회사 설립 시 각각 발급하던 3개의 등기 서류를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는 '삼증합일'의 등기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회사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삼증합일' 등기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공상행정관리부서, 품질기술감독부서, 세무부서에서 각각 발급하던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이 '영업집조' 하나의 서류로 통합되어 발급됩니다. 통합되어 발급하는 '영업집조'에는 회사의 통일된 사회신용코드가 추가 기재됩니다.

중국인민은행 등 10개 부서, 「인터넷 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 연합 발표

최근, 중앙은행 등 10개 부서에서 연합하여 「인터넷 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도의견'은 "창조혁신을 장려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며, 유익한 것은 극대화하되 해로운 것은 최소화하여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는 모토에 따라 창조혁신을 장려하고, 인터넷 금융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도의견'은 위 10개 부서들을

통하여 인터넷 금융에 대하여 적극 육성하되 규제 또한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무분별한 성장 국면을 종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NGO 등에 관한 법률(LAW on Associ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시행

NGO 등에 관한 법률(LAW on Associ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이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에서 NGO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등록하여야 하고, 18세 이상의 캄보디아 국민 최소 3인이 NGO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내무부에 등록된 NGO는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부여받아 NGO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NGO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NGO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NGO들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위 법률의 제정으로 보다 많은 NGO들이 업무에 편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기업행동규범

상장회사는 증권시장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써의 자각 아래 회사정보공개의 한층 더한 충실함에 의하여 투명성확보가 요구되는 것에 더하여 투자자보호 및 시장기능의 적절한 발휘 관점에서 적절한 기업행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기업행동규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행동규범은 상장회사로써 최소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 상장회사에 대한 요청사항을 명시하여 노력의무를 과한 '바람직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표조치 등 실효성확보수단의 대상이 됩니다.

준수해야 하는 사항

- 제 3 자할당에 관한 준수사항
- 유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주식분할 등 금지
- MSCB 등의 발행에 관한 준수사항
- 서면에 따른 의결권행사 등의 의무
- 상장 외국회사의 의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관한 의무
- 이사회, 감사역회 또는 위원회, 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 독립임원의 확보의무
- 회계감사인의 감사증명 등을 행하는 공인회계사 등 선임의무
-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정비의 결정의무
- 매수방어책 도입에 관한 준수사항
- MBO 등의 공개에 관한 준수사항
- 지배주주와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상장회사 감사사무소 등에 의한 감사
- 내부자거래 금지

-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 유통시장의 기능 또는 주주의 권리 훼손행위 금지

바람직한 사항(노력의무)

- 바람직한 투자단위 수준 이행 및 유지
- 의결권행사를 용이하기 위한 환경정비
- 무의결권주식 주주 교부서류
- 내부자거래 미연방지에 대한 체제정비
- 반사회적 세력 배제에 대한 체제정비 등
- 상장회사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원칙의 존중
- 회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정확한 대응체제 정비

[출처: [일본증권거래소그룹\(JPX\) 홈페이지](#)]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기본원칙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에 대해서

본 코드에 있어 '코포레이트 거버넌스'는 회사가 주주를 비롯하여 고객·종업원·지역사회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투명·공정하고 신속·과단(果斷)한 의사결정을 행하기 위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본 코드는 실효적인 코포레이트 거버넌스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주요한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실천되는 것은 각각의 회사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한 자율적 대응이 도모되는 것을 통하여 회사, 투자자, 나아가서는 경제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주의 권리·평등성의 확보】

1. 상장회사는 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과 함께 주주가 그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회사는 주주의 실질적인 평등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수주주나 외국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주 권리의 실질적인 확보, 권리행사에 관한 환경과 실질적인 평등성의 확보에 과제와 우려가 발생하기 쉬운 면이 있으므로 충분히 배려를 해야 한다.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하고의 적절한 협동】

2. 상장회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은 종업원, 고객, 거래처, 채권자, 지역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원(resource) 제공과 공헌의 결과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자하고 적절한 협동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사회·경영진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입장과 건전한 사업활동 윤리를 존중하는 기업문화·풍토의 구성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적절한 정보공개 및 투명성 확보】

3. 상장회사는 회사의 재정상태·경영성적 등 재정정보, 경영전략·경영과제, 리스크, 거버넌스에 관한 정보 등의 비재무정보에 대해 법령에 의거한 공개를 적절히 행하는 것과 함께 법령에 의거한 공개 이외의 정보 제공에도 주체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 때에 이사회는 공개·제공되는 정보가 주주하고의 사이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행할 때에 기반이 되는 것에도 근거하여 이러한 정보(특히 비재무정보)가 정확하고 이용자에게도 이해하기 쉬우며 정보로서의 유용성이 높은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 등의 책무】

4. 상장회사 이사회는 주주에 대한 수탁자책임·설명책임을 근거하여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수익력·자본효율성 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 (1) 기업전략 등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
 - (2) 경영진 간부에 의한 적절한 리스크테이크를 지원하는 환경정비를 행할 것
 - (3) 독립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집행역 및 소위 집행임원을 포함)·이사에 대해 실효성이 높은 감독을 행할 것

이러한 역할·책무는 감사역회설치회사(그 역할·책무의 일부는 감사역 및 감사역회에서 맡는 것으로 한다),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감사등 위원회 설치회사 등 어느 쪽의 기관설계를 채용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절히 다해야 한다.

【주주하고의 대화】

5. 상장회사는 그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장 이외에서도 주주하고의 사이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행한다.

경영진 간부·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주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관심·우려에 정당한 관심을 주는 것과 함께 스스로 경영방침을 주주에게 이해하기 쉬운 모양으로 설명하여 그 이해를 돕는 노력을 행하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관한 균형을 가진 이해와 그러한 이해를 근거한 적절한 대응에 노력을 해야 한다.

[출처: 일본증권거래소그룹(JPX) 홈페이지]